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08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(MILS공법)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신이앤씨		
	주 소	우05854,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, A동 605호		
	전화번호	02-527-8449	팩스번호	02-527-8448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부명건설산업		
	주 소	우15288,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23, 2층 203호		
	전화번호	031-417-5882	팩스번호	031-417-5883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94호
- 명 칭 :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(MILS공법)
- 기술분야 : 토목 > 상.하수도 >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상·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튜브를 기존관(D200mm~D1,500mm)에 반전 밀착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(MILS:Multi-Inversion Lining System)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상·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(D200mm~D1,500mm)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6.07.28~2030.07.27.(14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